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을 중심으로 -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전공)

조 용 환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지역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동 욱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전공)
조 용 환

조용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2월

위 원 장 박 상 인 (인)

부위원장 권 일 웅 (인)

위 원 김 동 욱 (인)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역 내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학대 인식 수준 향상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예방과 사후 조치까지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10월 발생한 故정인양 사망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찰관의 학대 인식정도는 학대사건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영향을 미쳐 천차만별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학대 인식에 관한 국내 연구는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학대 인식수준을 살펴보고 그 원인변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서울경찰청 소속 31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96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신체적 학대 인식, 정서적 학대 인식, 성 학대 인식, 방임 인식 등 4가지이며, 독립변수로 개인적 요인인 정서적 공감능력과 체벌에 대한 태도와 직무적 요인인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정도를 설정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통제변수로 삼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평균 아동학대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4.5495로 나타났으며, 4가지 학대유형 중 성 학대가 4.8535, 신체적 학대가 4.5804, 정서적 학대가 4.5122, 방임이 4.251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 혼인여부, 재직기간, 관련부서 근무기간은 신체적 학대에, 성별, 혼인여부는 정서적 학대에, 성별은 성 학대에, 혼인여부, 재직기간은 방임인식 점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적 특성 중 정서적 공감능력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체벌에 대한 태도는 모든 종속변수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인식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직무적 요인 중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정도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인식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 증진 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경찰관 개개인의 정서적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아동복지법에서 국가기관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의무를 부여했지만 연1회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체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어 실효성이 낮을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적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교육효과를 높일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로 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 내부 조직원을 상대로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간 경찰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해온 체벌 인식 개선 캠페인은 일반 국민에만 초점을 두고 이뤄진 측면이 있다. 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합동 워크숍 개최, 자체 인식도 조사, 역할극이나 홍보영상 경진대회 개최 등과 같은 다양항 방안을 통해 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학대부서 인재 선발시 학대인식 수준, 체벌에 대한 태도, 관련직무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선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껏 보건복지부 등에서 실시해온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 경찰관은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 연구를 계기로 경찰관들의 아동학대 인식도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뤄져, 학대 인식수준이 한층 향상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근절되길 간절히 바란다.

주요어 : 경찰,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 인식, 영향요인

학번 : 2021-24280

목 차

제 1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 2 절 연구 대상 ····· 3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5

제 1 절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 5

1. 아동학대의 개념 ····· 5
2. 아동학대의 유형 ····· 6

제 2 절 아동학대 발생 원인 및 현황 ····· 8

1. 아동학대 발생 원인 ····· 8
2. 아동학대 현황 ····· 9

제 3 절 아동학대 인식 ····· 10

1. 아동학대 인식의 개념 ····· 10
2.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 ····· 11
3.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 ····· 12
4.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 ····· 14

제 4 절 아동학대 인식 영향요인 ····· 15

1. 인구사회학적 요인 ····· 17
2. 개인적 요인 ····· 18
   1) 정서적 공감능력 ····· 18
   2) 체벌에 대한 태도 ····· 19
3. 직무적 요인 ····· 20
   1)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정도 ····· 20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 22

제 1 절 연구 모형 ····· 22

제 2 절 연구 가설 ····· 23

제 3 절 조사 대상 및 방법 ····· 24

제 4 절 변수의 정의와 특징 ····· 24
1. 종속변수 ····· 24
2. 독립변수 ····· 27
1) 개인적 요인 ····· 27
2) 직무적 요인 ····· 29
3. 통제변수 ····· 30
1) 인구사회학적 요인 ····· 30
4. 설문지 구성 ····· 31
제 4 절 분석 방법 ····· 31
제 4 장 연구 결과 ····· 33
제 1 절 표본의 특성 ····· 33
제 2 절 측정도구의 신뢰성 ····· 34
제 3 절 주요변수의 특성 및 상관관계 ····· 35
1.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 35
2.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 36
1) 개인적 요인 ····· 36
2) 직무적 요인 ····· 37
3,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 40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41
제 4 절 가설 검증 ····· 44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차이 ····· 44
1) 신체적 학대 인식의 평균 차이 ····· 44
2) 정서적 학대 인식에 평균 차이 ····· 47
3) 성 학대 인식에 평균 차이 ····· 50
4) 방임 인식에 평균 차이 ····· 53
2. 개인적 요인 및 직무적 요인이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 56
1) 신체적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 57
2) 정서적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 59
3) 성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 61

4) 방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63
5) 가설 검증 결과 ····· 65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67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67

제 2 절 정책적 제언 ····· 70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71

참 고 문 헌 ····· 74

부록(설문지) ····· 81

Abstract ····· 85

표 목 차

표 1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의 독립, 종속변수 정리 ····· 16
표 2 종속변수 설문문항 ····· 26
표 3 독립변수 개인적 요인 설문문항 ····· 28
표 4 독립변수 직무적 요인 설문문항 ····· 29
표 5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설문문항 ····· 30
표 6 설문지 구성 ····· 31
표 7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3
표 8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 34
표 9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 35
표 10 독립변수 개인적 요인의 기초통계량 ····· 36
표 11 독립변수 직무적 요인의 기초통계량 ····· 37
표 12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평균값 비교 ····· 37
표 13 독립변수 직무적 요인(법지식 정도) 문항별 정답빈도 ····· 38
표 14 경찰관과 신고의무자의 법지식 문항별 정답률 비교 ····· 39
표 15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 40
표 16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 43
표 17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신체적 학대 인식 차이 ····· 44
표 18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정서적 학대 인식 차이 ····· 47
표 19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 학대 인식 차이 ····· 50
표 20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방임 인식 차이 ····· 53
표 21 외생변수 통제 후 독립변수가 신체적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 57
표 22 외생변수 통제 후 독립변수가 정서적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 59
표 23 외생변수 통제 후 독립변수가 성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 61
표 24 외생변수 통제 후 독립변수가 방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 ····· 63
표 25 각 학대유형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종합 ····· 65
표 26 가설 검증 결과 ····· 65

그 림 목 차

그림1 연구 모형 ····· 2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동학대 범죄는 어릴 때 한번 피해를 경험하게 되면 평생 세상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되고, 사회부적응과 우울증과 같은 후유증을 앓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이다 보니 자력구제에 나서거나 학대를 피하기 쉽지 않고, 장기간 학대피해가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서구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하여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12년 이후 2021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보건복지부 2021년 학대 피해 아동보호 현황), 아동학대 범죄 검거건수도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2021년 경찰청 범죄통계)

대한민국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예방부터 초기대응 및 사후 조치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경찰은 아동학대사건의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신설하였고, 2016년 4월 20일에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학대전담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서나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내 여청수사팀에 소속된 수사관들이 전담하여 수사하고, 여성청소년계 학대전담경찰관들에 의해서 예방 및 보호조치가 이뤄지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2020년 10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故정인양이 양부모 학대로 숨지는 사건에서 3차례에 걸친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 대응은 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경찰관이 담당하는 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해 갖고있는 인식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할지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노성훈·안재경, 2020 ; 노충래·정익중·전종설·김정화, 2012).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한국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낮은 인식 수준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과 적극적 대처 행동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박미정·오두남, 2019) 한유미·조명자(2018)에 따르면 비록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아동학대 인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2011) 실태조사에서 전문가들의 45.%가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필요한 조치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 인식 개선'을 가장 많이 지목한 바도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 경찰의 대응방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의 인식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오은영, 2013)

그동안 성폭력, 불법촬영범죄,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경찰관의 인식을 다룬 경험적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이명신·양난미, 2011; 노성훈·안재경, 2020; 박순기·박정선, 2020)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류의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는데, 하나는 부모, 보육교사들과 같은 학대행위 주체이며, 나머지 하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의료기관 종사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종사자들과 같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자들이다. 현직경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국내 연구는 2차례에 불과하다. 우선, 10년 전 진행된 노충래·정익중·전종설·김정화(2012)의 연구는 2016년 학대전담 경찰관제도 도입은 물론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진행되었다 보니 현재 시점에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지난해 임혁, 박외병(2021)은 여성청소년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 고충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아동학대 인식의 조절 효과를 연구한 바가 있다. 다만, 이 연구의 경우 이직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인식도 개선에 필요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편, 현직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강남수, 이상열(2021)이 신임 경찰 교육생의 학대 인식 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그 외에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경찰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대부분 제도적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류기환, 2021; 장응혁, 2017; 이영돈, 2016).

다만, 실무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바는 아니다. 경찰청은 2019년 아동학대 수사 업무매뉴얼을 별도 제작해 '아동학대 범죄의 잘못된 통념 깨기'라는 내용으로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경찰관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매뉴얼이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사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학대에 대한 인식 및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 2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울지역 내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서울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및 서울경찰청 소속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수는 1,262명이다.

아동학대 업무는 시도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 중이며, 통상 사건 수사는 담당하는 수사팀(이하 여청수사팀)과 예방 및 보호처분 등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로 나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대 업무는 여성청소년계 소속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이 아동학대 예방부터 신고 접수 시 수사 연계 및 전수 합심 조사와 수사 중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여청수

사팀 소속 수사관은 휴일 전수 합심 조사와 사건 발생 시 긴급 임시 조치 및 사건 수사 등을 진행한다. 112 긴급전화로 아동학대 범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여청수사팀 수사관뿐 아니라 지구대·파출소 근무경찰관들도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고 있는데, 다만, 통상적으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여청수사팀 현장 임장 전까지만 가, 피해자 분리 및 응급조치,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아동학대 업무에 있어 그 역할은 여청수사팀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21년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수는 3,135명이며, 전체 경찰관 수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021)'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전국의 학대예방경찰관(APO) 수는 669명이며, 2018년 국정감사 발표자료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여청수사팀 경찰관 수는 2,326명으로 나타났다.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은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져 왔다. 무엇보다 나라마다 갖고있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느 나라에서 학대로 여겨지는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는 훈육으로 간주되곤 할 정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성적 학대, 방임 등 최초의 학대 개념은 1961년 미국의 Kempe(1962)가 '피학대아동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최초로 사용하였다. 이 당시의 학대 개념에는 학대의 대상은 영아로만 제한되었고, 학대 유형도 신체적 학대만 해당하였다.

다른 학자 중 Fontana(1979)는 아동학대를 부적절한 아동 취급 증후군(maltreatment syndrome)으로 규정하고, 정서적 학대, 방임, 영양 부족까지 학대 범위에 포함시켰다. Gill(1975)은 '아동들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학대 또는 방임 행위나 이유에 의해 아동들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개인, 시설이나 사회 일반에 의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를 학대로 정의했으며, Lau·Kosberg(1979)는 신체적 학대, 물질적 학대, 심리적 학대, 권리의 침해로 유형화하였고, Kadushin(1982)은 신체적 학대, 불량한 양육, 기본적인 의료적 보호 거부, 정기적으로 등교 제한, 노동력 착취나 과도한 노동, 유해하거나 불건전한 환경에 노출, 정서적 학대 로 매우 세분하여 정의 하였다(김숙연, 2008)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개념은 학대 행위가 어떠한 형태를 띄고 있는지를 위주로 결정되는데, 학대 유형이나 가해자의 의도성, 학대에 의한 손상 수준의 범위에 따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는 게 통상 협의의 개념으로 보며, 광의의 개념은 신체적 학대 외에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을 모두 포함한

다.(이현순, 2014).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초기에는 협의의 개념이 주를 이뤘으나, 점차 광의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는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의 내용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이란 신생아, 영유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을 포괄하는 용어로 18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는다.

다만, 아동학대 개념과 별개로 '13년 울주, 칠곡지역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별도 규정하여 각각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학대 범죄 처벌과 절차를 위한 특례법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법은 기본법 성격을 지니고 있어,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로 정의해 범위를 보다 크게 두고 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통상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되며, 아동복지법에서 각각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말하는데,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전까지 구 아동복지법과 대법원판례(2015도6781)는 상해에 따르는 신체의 부정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체적 학대로 보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부터 '신체적 학대'를 신체 손상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인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같은법 제17조제5호)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2015도13488)는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며, 구체적 목적이 아닌 미필적 인식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로,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같은 법 제17조 제 2호)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방임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같은 법 제17조제6호)를 말한다.

각각의 학대 유형별 사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신체학대의 예로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를 포함하여 아동을 강하게 흔드는 것과 같이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적 학대의 예시로는 원망적·경멸적인 언어폭력,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하는 행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성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며,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를 포함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네 종류로 세분화된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여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경우,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 2 절 아동학대 발생원인 및 현황

1. 아동학대 발생 원인

한유미, 조명자(2018)에 따르면, 학대의 발생 원인은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서술되는데, 첫째는 학대 발생 자체에 초점을 두는 방안으로 아동, 부모, 가정, 사회적 요인과 같이 아동학대를 직접 유발하는 요인을 위주로 서술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학대가 발생한 상황에 입각해서 서술하는 방식으로 어떤 상황적 맥락 안에서 발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수배경 이론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방식이 있는데, 학습이론, 생태사회적 이론, 애착이론과 같이 이론적 접근방식이다.

한소영(2022)은 학대 원인은 크게 부모 요인, 아동 요인, 가정요인, 환경이나 사회요인 4가지로 나뉘며, 이러한 학대 원인을 4가지 관점에서 보면, 정신병리학적, 발달론적, 사회심리학적, 생태학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정신병리학적 관점은 원인을 부모의 병리적 특성으로 보며, 이러한 특성은 보통 부모 자신의 성장 과정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둘째, 발달론적 관점은 학대 발생 원인을 아동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보는 관점인데, 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와 같이 신체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 등이 그 예이다.

셋째,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아동학대의 원인을 가정환경적 특성, 경제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관점인데, 가정환경적 특성은 가족의 역동성이나 가족간 상호작용 등을 말하며, 가정 경제적 특성은 기간에 따른 스트레스, 좌절 등이 있으며, 사회문화적 특성은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체계 결여, 등이 있다.

넷째, 생태학적 관점으로 학대 원인을 다원론적 측면에서 보는 방식인데, 노충래(2002)는 미시적, 거시적 관점을 모두 보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통상 아동을 둘러싼 사회환경과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Belsky(1993)은 개인 차원, 가족 차원, 사회공동체 차원, 문화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2. 아동학대 현황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따라서 매년 정기국회까지 아동학대 현황 등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 8월 31일 국회에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는 52,083건이 신고되어, 37,605건이 학대로 판단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전체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2021년 아동학대 발견율은 5.0%를 기록해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개선되고 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교육 등 정책적 노력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다만, 미국의 8.4%와 비교할 때는 여전히 발결률 자체가 낮은 수준이어서, 아직은 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학대 행위자의 경우, 83.7%가 부모였으며 대리양육자 9.6%, 친인척 4.0%를 나타냈다. 2021년 1월에 국회에서 민법 개정을 통해 징계권을 폐지했음에도 여전히 훈육이란 명목 아래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대 유형의 경우에는 중복 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성 학대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아동학대로 인해 40명이 사망했는데, 2020년 43명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

나, 여전히 많은 아동이 심한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울러,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 중 2021년에 신고접수되어 재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총 5,517건, 재학대 아동 명수는 4,176명을 기록했는데, 2021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인 37,605건 대비 재학대 사례 비율이 14.7%을 나타내 2019년 11.4%, 2020년 11.9%로 증가세를 보였다.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학대 근절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 3 절 아동학대 인식

1. 아동학대 인식의 개념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며(표준국어대사전), 아동학대 인식은 아동학대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아동학대 인식의 의미도 달라진다.

한편, 이배근(2004)은 따르면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동복지법에서와 같이 특정 행동이 학대에 해당하느냐를 통해 개념화하는 방법 외에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행동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채윤경(2017)은 그간의 “아동학대 인식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살펴보면, 성인의 특정 행동이 학대에 포함되는지를 의미하는 ‘행동에 대한 정의’와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징후로 학대를 파악하는 ‘증상과 관련된 정의’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라고 하였다.

먼저 행동에 대한 정의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은 아동 양육의 책임자인 부모,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들을 상대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오은영, 2013; 홍순옥·이옥경, 2010; 이옥경 외, 2009; 김경옥, 2006), 징후와 관련된 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신고의무자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채윤경, 2017; 정종오, 2008; 윤소연, 2004,; 박옥주, 2005; 전진욱, 2006; 윤선오·박복숙, 2011; 허남순, 2003, 노충래 외, 2012)

채윤경(2017)은 이 둘의 차이는 결국 아동학대 인식을 측정하는 척도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해 양육책임자인 부모와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자,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뤄져 왔는데, 주로 연구 대상의 학대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거나 부모와 신고의무자 간의 인식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이뤄져 왔다.

한편, 학대 인식 수준을 살펴본 연구 중 정부 기관 등에서 한 실태조사도 적잖은데, 보건복지부와 숙명여대산학협력단(2011), 보건복지부(2000), 국가인권위원회(2006. 2021), 부산여성가족개발원(2009)에서 실시한 전국 또는 지역단위 실태조사에서는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일반인, 전문가를 모두 포함해 학대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아쉽게도 경찰관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

2021년 보건복지부 발표 통계에서 부모가 학대 행위자의 8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볼 때 아동학대는 부모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부모는 성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순으로 아동학대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요섭(2011)의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에 관한 연구, 홍순옥·이옥경(2010)의 부산지역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 김경옥(2006), 오은영(2013)의 6세 이하 아동 양육하는 학부모에 관한 연구, 김현주(2020)의 초등학생 부모 103명을 상대로 한 인식조사, 이병록, 황환(2018)은 경기도 거주 학부모 대상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조명자·이서영(2016)과 김혜영(2013)의 연구에서는 성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이옥경 외(2009)가 부산지역 초등학생 부모를 상대로 시행한 실태조사에서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성 학대는 평균 4.67점, 신체적 학대는 4.11점, 정서적

학대 4.11점, 방임 3.87점으로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같게 나타났다.

한편, 김수진(2017)은 부모 중 아버지의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에서 성학대, 정서 학대, 방임, 신체 학대 순으로 인식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3.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처벌법 10조(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는 25개 영역의 종사자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세원(2017)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0년 전후부터 진행되었으며, 주로 보육교사·유치원 교사·초중고 교사가 주된 대상이었던 반면, 의료종사자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야 연구가 실시된 것이라 말한다.

보육교사의 경우, 연구 결과마다 학대 인식 수준에 차이가 다소 발생하였다. 김소연・윤혜미(2003)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 의무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은 신체적 학대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했다고 하였다.

양명자(2016)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인식에서 4점 만점에 평균이 3.04점을 나타냈고, 하위 유형별로는 방임,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순이었다.

김혜정・김세곤(2020)은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4.56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는 성적 학대 4.84, 신체적 학대 4.68, 정서적 학대 4.45, 방임 4.36, 순으로 나타났다. 한유미・조명자(2018)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62점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성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순으로 인식 수준이 나타나, 동일한 순서를 보였다.

공유경, 이영화(2019)의 예비 보육교사에 연구에서는 4점 만점에 신체적 학대가 3.74점, 성적 학대 3.55점, 방임 3.50점, 정서적 학대 3.3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영주, 박혜원(2001)과 정채옥(2002)은 교사들은 신체적 학대 인식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정채옥(2002)은 신체적 학대 중에서도 '흉기로 위협하거나 뜨거운 것으로 자녀의 몸을 지지는 경우'에 가장 민감하게 인식한 반면,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때린다.' 문항에는 낮은 인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의료종사자의 경우 민혜영 외(2017)에서는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수준이 4점 만점을 기준 3.59점으로 나타나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김경화(2017)는 간호 대학생에 관한 연구에서 5점 만점 기준 평균 3.85점으로 학대 인식이 나타났고, 신체적 학대 4.04점, 정서적 학대 3.57점, 성학대 3.79점, 방임 4.00점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홍순옥·이옥경(2010)의 부산지역 신고의무자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는 신고의무자들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성 학대에 대해서는 4.75점을, 정서적 학대 4.32점, 신체적 학대 4.27점, 방임 4.06점 순으로 학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단위 실태조사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진행된 2011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는 교사와 의료직, 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과 같이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신고의무자 12개 직종의 종사자들로 구성된 1,058명의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인식 수준을 측정한 바 있다.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인식 평균은 5점 만점에 신체적 학대는 4.55점, 정서적 학대는 4.34점, 성 학대는 4.89점, 방임은 4.25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4.50점을 보였다. 하위변인의 경우, '틀림없는 학대'로 응답한 비율이 신체적 학대는 71.9%, 정서적 학대 55.5%, 성 학대 90.8%, 방임 49.7%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체적 학대에서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가 92.8%로 가장 높게,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가 30.9%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정서적 학대 항목에서는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를 74.9%가 틀림없는 학대로, '심하게 야단쳐서 아동의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는 39.5%로 가장 낮은 학대 인식률을 보였다. 성학대는 '억지로 아동의 입을 맞추는 행위'가 82.8%로 가장 낮은 반면, 나머지는 90% 이상의 명백한 학대 인식을 보여 가장 높은 학대

인식도를 나타냈다. 방임은 '아동에게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가 64.8%로 가장 높았으며, '어두워질 때까지 아동 혼자 집을 보게하는 행위'의 경우는 41.4%를 나타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4.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2011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해 온 전국단위 실태조사에서도 경찰관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로 외국의 연구 위주로만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 수준을 살펴볼 수 있었다.

외국 연구의 대부분은 타 직업군이나 일반인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Trute, Adkins, MacDonald(1992)의 연구에서는 성 학대의 경우, 아동복지 전문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 경찰의 순서로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aunders(198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 학대에 있어, 범죄 심각성 인식조사 결과, 검사, 사회복지사, 판사, 경찰, 변호사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Jasmine et al.(2000)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경찰, 변호사, 교사 등 아동보호 전문가 1,238명과 일반인 401명을 상대로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해 인식도를 조사해 이를 비교하였는데, 신체적 학대 중 '아이를 잡고 세게 흔든 행위'는 경찰, 교육자는 46.8% 이상이 학대로 인식한 반면,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변호사와 일반인은 46.7% 이상이 '학대'라고 응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의 경우, 간호사와 일반인은 학대로 인식한 반면, 경찰, 사회복지사, 의사, 변호사, 교육자는 '학대일 듯'어로 답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에도 '아동을 집에 혼자 있게 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는 17%가 법률가는 15%가, 경찰관의 경우는 30.2%가 학대가 아니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Zhi Jing Lui 외(2020)의 연구에서는 경찰관은 전문가 집단 중 교육자, 상담사, 간호사, 의사보다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성 학대의 경우, 교육자와 상

담사들이 경찰과 의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일반인도 경찰보다 높은 성 학대 인식을 나타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도 경찰관의 인식 수준이 교육자, 상담사, 간호사, 의사 등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들에 비해 가장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의 경우, 노충래·정익중·전종설·김정화(2012)의 연구에서는 경찰 집단은 아주 심한 학대에 대해서도 약 25%는 정도에 따라 5%는 학대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어 타 법집행담당자 집단보다는 학대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신체학대의 경우, 심한 학대 중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힌 행위'와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에 대해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검사와 판사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심한 학대의 경우에도 경찰은 약 70%만 명확한 학대라고 인식해 100%를 보인 판사, 검사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적 학대에 있어서는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은 행위'가, 방임에 있어 '역시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한 행위'에 대해 경찰의 학대 인식이 낮게 나타나 검사, 판사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임혁, 박외병(2021)의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에 대한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아동학대 인식 평균값이 4.53으로 나타나 최댓값(M=5.00)에 매우 가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경찰관들의 학대 인식도가 4.66으로 같은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의 평균인 4.49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제 4 절 아동학대 인식 영향요인

<표1>은 아동학대 인식을 원인 또는 결과변수로 설정하여 진행한 연구들을 정리한 것으로,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는 다양하다. 선행연구들은 연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집단간 평균차이,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였다.

<표1>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의 독립, 종속변수 정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독립변수	종속변수
Lui, Zhi Jing 외 6 (2020년)	경찰, 간호사, 의사, 상담사, 일반인	설문조사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학대 인식
노충래 외 3 (2012)	법집행담당 (검사, 판사, 경찰)	설문조사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학대 사건 담당여부 (총재직기간) 아동학대 관련 교육 참여의사	아동학대 인식
김정림, 윤혜미(2002)	유치원생 어머니	설문조사	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학대 인식
김현주 (2020)	초등학생 부모	설문조사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 아동학대 지식, 아동학대 신고관련 인식	아동학대 인식
홍순옥, 이옥경 (2010)	초등학생 부모	설문조사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연령,직업, 학력)	아동학대 인식
이병록, 황환 (2018)	학부모	설문조사	양육스트레스 ※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아동학대 인식
이병록 정선희 (2019)	학부모	설문조사	사회적지지 ※조절변수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방임 인식
김혜정, 김세곤 (2020)	보육교사	설문조사	직무만족	아동학대 인식 학대 방지노력
홍인실, 전정민 (2020)	보육교사	설문조사	보육교사의 전문성 직무스트레스	아동학대 인식
정덕희 (2021)	보육교사	설문조사	공감능력 ※ 매개변수 직무만족도	아동학대 인식
양명자 (2016)	보육교사	설문조사	아동학대 인식	신고의무 태도

한유미, 조명자 (201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설문 조사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방지노력
공유경, 이영화(2019)	예비 보육교사	설문 조사	자아존중감, 교직전문성 인식, 교직적성	아동학대 인식
윤영배, 유준호(2017)	예비 유아교사	실험	인성교육 프로그램	아동학대 인식
류미아 외 2 (2019)	유아교사	설문 조사	인권감수성	아동학대 인식
김혜영 (2013)	일반인	설문 조사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학대 체벌사용 인식
박미정, 오두남 (2019)	대학생	설문 조사	인구사회학적 특성,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학대 지식수준	아동학대 인식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경찰관의 특성과 밀접한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변수를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경찰관들의 개인적 요인과 직무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개인적 요인은 크게 정서적 공감능력과 체벌에 대한 태도로 살펴보았으며, 직무적 요인은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수준으로 보았다.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며, 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자녀 수, 소득수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홍순옥·이옥경, 2010; 이옥경 외, 2009; 김경옥, 2006; 정소영, 2003; 허남순, 2003; 김정림·윤혜미, 2002).

성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김혜영, 2013), 신체적 학대의 경우, 남성이 더 높은 연구결과(정소영, 2003)도 있다.

결혼여부는 학대 유형 중 일부에만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윤선오·박복순, 2011)와 결혼 상태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김혜영, 2013)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녀 수의 경우, 일반인은 자녀 수가 영향을 미치지만, 전문가 집단은 자녀 수와 큰 상관이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이옥경 외, 2009).

한편,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으면 학대 인식이 높다는 연구결과(김혜영, 2013; 안재진, 2002)와 이와 반대라는 연구결과(홍순옥·이옥경, 2010), 연령과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김현주·박미경, 2018)도 있다.

임혁, 박외병(2021)은 경찰관의 경우에는 성별과 연령, 학력 그리고 직위에 따라서는 학대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 따라 인식도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밝혔다.

강남수, 이상열(2021)의 신임 경찰관의 학대 인식도 조사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학대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식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력도 신체, 정서적 학대에서 대졸 이상 응답자들이 높게 지적되었으며, 방임은 전문대졸업자가 가장 높고 고졸 응답자가 가장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가족구성원에 따라서도 정서적 학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 개인적 요인

1) 정서적 공감 능력

Hoffman(1975)은 공감은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더 부합하는 정서적 반응”이라 정의하였으며, 정서적 공감이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백영숙・강병재(2018)는 공감능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과 같은 정서상태로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감능력은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어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이지수・한지수, 2020).

한편, 김성섭(2018)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 활동의 목적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경찰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공감능력은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류미아, 윤혜주, 이병호(2019)는 정서적 공감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인권감수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아동학대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마지순(2019)은 예비유아교사에 대한 연구에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정덕희(2021)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감능력과 아동학대 인식 사이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은 경우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 체벌에 대한 태도

체벌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를 말한다(두산백과사전).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는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정림·윤혜미, 2002), 또한, 체벌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2013).

세부적으로 신체적 학대의 경우, 체벌에 대한 태도와 소득수준이 신체적 학대 인식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으며(정소영, 2003; 김정림·윤혜미, 2002),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체벌에 대한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홍순옥·이옥경, 2010; 김정림·윤혜미, 2002). 한편, 김현주(2020)에 따르면, 초등학생 부모에 있어 아동체벌 허용요인은 신체적 학대 인식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의 체벌 허용여부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경우, 체벌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지에 대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라고 69.8%가 응답하고, '절대 허용될 수 없다'라는 29.2%, '대부분

허용될 수 있다'라는 0.9%, '늘 허용될 수 있다'라는 0.1%)로 매우 낮았다. 또한, 체벌 허용정도는 직업, 성별, 연령, 아동학대 발생정도 인식,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학대가 매우 자주 일어난다고 인식한 응답자들이 아동학대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체벌에 대한 허용도와 아동학대 인식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나 초등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훈육을 위한 체벌 필요성에 대해서 '체벌이 올바르다고 할 수 없지만,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 있을 경우 허용될 수 있다'로 응답한 이가 62.5%를 나타내었고, '어떤 경우에도 체벌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33.2%, '체벌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 데 효과적이므로 필요하다'가 4.1%, '기타가 0.2% 순으로 나타나, 여전히 부모들은 훈육을 위한 체벌에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체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경우,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직무적 요인

1)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정도

지식은 어떤 대상을 아는 작용 및 이 작용에 의하여 알려진 내용을 말한다.(두산대백과사전) 통상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정도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원인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에 대한 지식을 일컫는다.(박미경·김현주·강면진. 2015) 대다수 선행연구들은 Feng(2003)에 의해 개발된 아동학대 지식척도(Child Abuse Report Intention Scale: CARIS)을 토대로 아동학대 법지식수준을 측정하였다.(김진선·박경숙, 2005; 보건복지부 실태조사;2011, 박미경·김현주·강면진, 2015; 박미정·오두남, 2019; 김현주, 2020). 박미경·김현주·강면진(2015)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아동학대 지식은 교원의 성별, 연령, 근무학급, 최근 교육참여 여부, 학대 발생정도 인식, 신고제도 인식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식은 교원의 신고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오두남(2019)은 연구결과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수준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의 4가지 유형의 학대인식 점수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법지식 수준은 4가지 유형의 학대인식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학대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김현주(2020)의 초등학생 부모를 상대로 한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 인식에 있어서만, 아동학대 지식수준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2011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신고의무자의 지식정도를 살펴본 바, 지식점수는 12점 만점에 7.39점, 61.6%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지식 합산 점수는 직업, 연령, 결혼여부, 아동학대 교육 참여경험, 학대발생정도 인식, 아동학대 신고제도 인지,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정도는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 수준의 영향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서울 지역 내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개인적 요인(정서적 공감능력, 체벌에 대한 태도)와 직무적 요인(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수준)이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분석 틀은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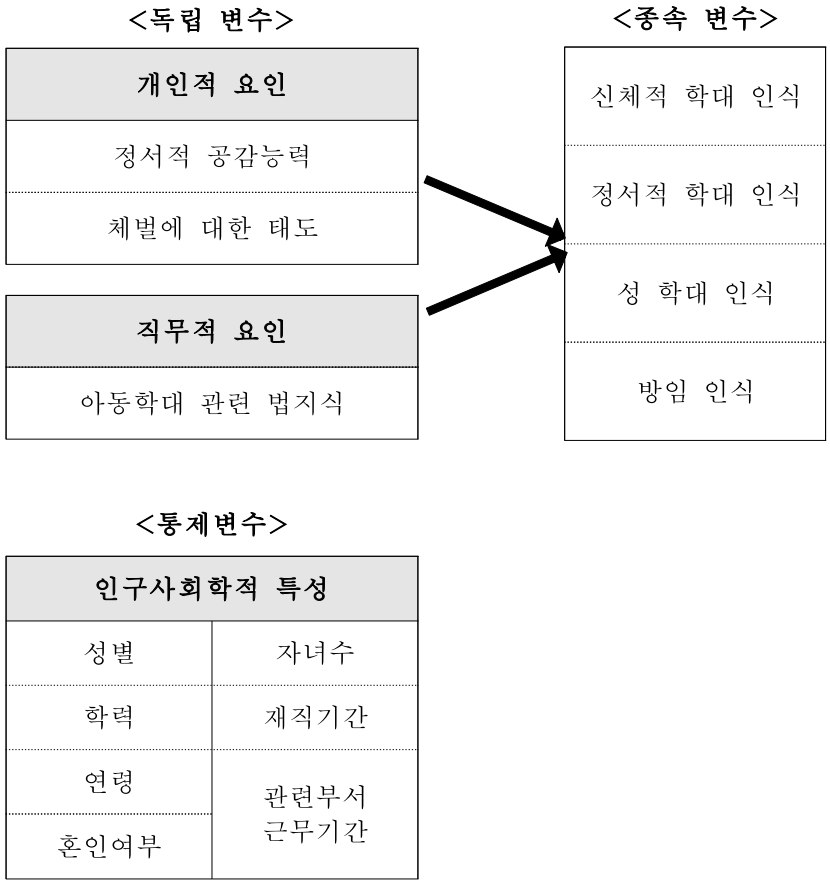

제 2 절 연구 가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 1-1. 정서적 공감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학대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 1-2. 정서적 공감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학대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 1-3. 정서적 공감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성 학대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 1-4. 정서적 공감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방임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2.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의 체벌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 2-1. 체벌에 대한 부정적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학대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 2-2. 체벌에 대한 부정적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학대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 2-3. 체벌에 대한 부정적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성 학대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 2-4. 체벌에 대한 부정적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방임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3.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의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 3-1. 아동학대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학대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 2-2. 아동학대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학대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 2-3. 아동학대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 학대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2-4. 아동학대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방임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제 3 절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서울경찰청 소속 31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중인 경찰관 1,2620명(22년 상반기 기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네이버폼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총196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방식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협조를 받아 해당 부성에서 31개 경찰관서 연락관을 상대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한 후 네이버폼 설문지가 링크된 URL을 문자로 전송하여 설문응답을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찰관서별로 제각각 운영중인 단체채팅방을 통해 설문조사 폼을 전파하여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자료를 회수하였다.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직원, 경찰서 과장 또는 계장・팀장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응답을 요청하였다.

제 4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신체적 학대 인식, 정서적 학대 인식, 성 학대 인식, 방임 인식 4가지이다. 통상 학대 인식수준에 관한 국내외 연구 대부분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모-자녀 간 갈등전술척도 CTS-PC(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문항(Straus et al, 1998)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Straus 외(1998)가 개발한 CTS-PC 척도는 비폭력적 훈육, 신체적 공

격, 정서적 공격, 방임 등의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 학대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심각한 학대와 경미한 학대 등으로 구분되고, 응답유형은 3가지로 '학대임', '학대아님', '정도에 따라 다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척도에 기반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보건복지부(2011)나 유니세프(2010)와 같은 국내 기관이나 국제기구 등이 조사한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찰관의 인식을 연구한 선행연구 중 노충래·정익중·전종설·김정화(2012)의 연구는 위 CTS-PC 척도 중 비폭력적 훈육을 제외한 24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여 학대 인식(학대임, 학대 아님, 정도에 따라 다름)을 판별하였으며, 최근 진행된 임혁, 박외병(2021)의 연구에서는 舊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에서 전국의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 중 신체학대 요인 12문항, 정서학대 요인 10문항, 방임 요인 10문항, 성학대 요인 7문항 등 총 39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11년 보건복지부와 숙명여대산합협력단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실태조사 내용 중 신고의무자를 상대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측정시 사용한 29개 설문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위 문항은 CTS-PC척도를 토대로 홍순옥・이옥경(2010)이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해당분야 실무자와 교수, 아동 전문 연구자에게 점검 및 보완을 받아 만든 것으로 신체학대 8문항, 정서학대 5문항, 성 학대 7문항, 방임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문항을 '전혀 학대가 아니다.' '학대가 아닌 것 같다' '모르겠다' '학대인 것 같다' '틀림없는 학대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을 선택한 이유는 CTS-PC척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가장 공신력 있는 보건복지부의 전국단위 실태조사에서 사용되어, 이미 진행된 신고의무자와의 인식 수준과도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CTS-PC 원척도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원 척도는 응답유형이 3가지로만 구분되어 인식 수준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실제 설문 문항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응답자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본 조사에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2> 종속변수 설문 문항

변 수		설문 문항	측정
아동 학대 인식 (29)	신체적 학대 (8)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하는 행위	1~5점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물건(재떨이, 책, 그릇, 의자 등)을 던지는 행위	
		회초리 이외의 물건(벨트, 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때리는 행위	
		세게 밀치는 행위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정서적 학대 (5)	심하게 야단쳐서 아동의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오라!”고 말하는 행위	
		욕(멍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등)을 하는 행위	
		아동에게 “나가 죽어라”고 말하는 행위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	
	성 학대 (7)	억지로 아동의 입을 맞추는 행위	
		아동이 싫다고 해도 아동의 몸을 만지는 행위	
		억지로 아동의 옷을 벗겨 아동의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성인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어른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이 싫어하는데도 어른이 자기 몸을 만져달라 하는 행위	
		어른이 자신의 성기를 아동에게 갖다 대거나 넣는 행위	
	방	어두워질 때까지 아동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	

	임 (9)	아동의 옷이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지 않는 행위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 두는 행위	
		아동이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해도 아동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행위	
		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2. 독립변수

1) 개인적 요인

(1) 정서적 공감능력 : 강지영(2002)의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김성섭(2019)이 경찰관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 11개 중 10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2) 체벌에 대한 태도 : 고성혜(1992)가 개발한 체벌에 대한 지지도 척도를 김정림, 윤혜미(2002)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의 리커드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표3> 독립변수 개인적 요인 설문문항

변 수		설문 문항	측정
개인적 요인	정서적 공감능력 (10)	1.실직을 당해서 자식의 분유 값도 대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가장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1~5점
		2, 가난한 무의탁 노인을 보면 기분이 상한다.	
		3. 경기불황으로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노숙자들을 보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4.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같이 전쟁으로 고통 받는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	
		5. 내가 평소 싫어하는 친구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전혀 동정이 가지 않는다.	
		6.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참 안쓰럽다	
		7. 학살이나 구금, 고문 등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영화(또는 tv)에 깊이 빠져드는 편이다	
		8.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	
		9. 주변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나도 감정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10. 개인의 사생활을 염탐하는 TV오락프로그램을 보면 즐겁기보다는 짜증이 난다.	
	체벌에 대한 태도 (9)	1.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격언은 옳다	1~5점
		2. 사랑의 매는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3. 나쁜 버릇을 고치는 데는 그래도 매가 효과적이다	
		4. 이유를 막론하고 아이에게 매를 들면 안된다.	
		5. 모든 부모는 말을 듣지 않거나 말썽을 피우는 자기 자녀에게 매를 들 권리가 있다.	
		6. 아이들은 때리지 않고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7.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매를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8. 자기 아이가 미워서 때리는 부모는 없다.	
		9. 아이를 때려 키우면 때리는 것이 습관이 된다.	

2) 직무적 요인

(1) 법지식 정도 : 2011년 보건복지부와 숙명여대산합협력단에서 사용한 12개 설문문항 중 경찰관 특성에 적합한 10개 설문문항에 대해 정답 체크시 1점을 부여하고, 오답 및 '모르겠다' 0점을 부여하여 전체 합산 점수 높을 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4> 독립변수 직무적 요인 설문문항

변 수		설문 문항	측정
직무적 요인	법지식 정도 (10)	목둘레의 멍은 보통 사고에 의한 외상과 관련된다.	정답 체크시 1점
		아동의 모든 성적학대는 신체적인 폭력이 동반된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보통 학대를 당한 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	
		아동학대로 의심한 사례를 신고한 전문가는 만일 법정에서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아동학대와 방임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층 또는 상류층 집단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와 방임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아동은 부모와 격리되지 않는다.	
		성적학대를 당하는 대부분의 아동은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한다.	
		아동에 대한 대부분의 성적학대는 성교를 포함한다.	
		가출을 한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가출 전에 학대를 당했다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신체검진에서 정상일 수 있다	

3. 통제변수

1)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50대, 40대, 30대, 20대), 혼인여부(기혼=1, 미혼=0), 자녀수(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학력(고졸=0, 대졸=1, 대학원 졸업=1), 재직년수(10년 미만=0, 10년이상～20년미만=1, 20년이상～30년미만=2, 30년이상=3), 아동학대 관련부서 근무연수(3년 미만=0, 3년이상～5년미만=1, 5년이상～10년미만=2, 10년이상=3)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5>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설문문항

변 수		설문 문항
인구사회학적 요인(7)	성별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0 = 여성, 1 = 남성)
	학력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0 = 고등학교 졸업, 1 = 대학교 졸업, 2 = 대학 졸업)
	연령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0 = 20대, 1 = 30대, 2 = 40대, 3 = 50대)
	혼인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0 = 미혼, 1 = 기혼)
	자녀 수	귀하의 자녀의 수는 몇 명인가요? (0명, 1명, 2명, 3명, 4명이상)
	재잭년수	귀하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연수는 대략 얼마입니까? (0 = 10년 미만, 1 = 10년 이상 20년 미만, 2 = 20년 이상 30년 미만, 4 = 30년 이상)
	아동학대 관련부서 근무년수	귀하가 아동학대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재직연수는 대략 얼마입니까? (0 = 3년 미만, 1 = 3년이상~5년 미만, 2 = 3년 이상~5년 미만, 3= 5년 이상~10년 미만, 4=10년 이상)

4. 설문지 구성

<표6> 설문지 구성

구분	변수		문항개수	출처
종속변수(4)	신체적 학대 인식		8	2011년 보건복지부와 숙명여대산합협력단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실태조사 내용 중 신고의무자를 상대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측정시 사용한 29개 설문문항
	정서적 학대 인식		5	
	성 학대 인식		7	
	방임 인식		9	
독립변수(3)	개인적 요인	정서적 공감능력	10	강지영(2002)의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도구를 김성섭(2019)이 경찰관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한 척도
		체벌에 대한 태도	9	고성혜(1992)가 개발한 체벌에 대한 지지도 척도를 김정림, 윤혜미(2002)가 수정, 보완한 척도
	직무적 요인	법지식 정도	10	2011년 보건복지부와 숙명여대산합협력단에서 사용한 12개 설문문항
통제변수(7)	성별		1	명목척도
	학력		1	명목척도
	연령		1	명목척도
	혼인		1	명목척도
	자녀 수		1	명목척도
	재직년수		1	명목척도
	아동학대관련부서 근무기간		1	명목척도
소계			65	

제 4 절 분석 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9.0 for windows를 이용해 통계처리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측정문항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측정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주요 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 및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다.

다섯째, 외생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독립변수인 정서적 공감능력, 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정도가 종속변수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표본의 특성

연구 대상인 서울지역 내 경찰관서에서 설문에 응답한 여성청소년과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196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7>과 같다.

<표7>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 도(명)	백문율(%)
성 별	여성	62	31.6
	남성	134	68.4
학 력	고등학교 졸업	45	23.0
	대학교 졸업	141	71.9
	대학원 졸업	10	5,1
연 령	20대	21	10.7
	30대	97	49.5
	40대	56	28.6
	50대	22	11.2
혼인상태	미혼	72	36.7
	기혼	124	63.3
자녀 수	0명	94	48.0
	1명	50	25.5
	2명	41	20.9
	3명 이상	11	4.5
경찰 경력	10년 미만	112	57.1
	10년 이상~20년 미만	56	28.6
	20년 이상~30년 미만	20	10.2
	30년 이상	8	4.1
아동학대 관련부서 근무경력	3년 미만	4	2.0
	3년 이상~5년 미만	128	65.3
	5년 이상~10년 미만	33	16.8
	10년 이상	31	15.8

먼저, 응답자의 성별 분표는 여성이 31.6%, 남성이 68.4%였으며, 연령은 20대 10.7%, 30대 49.5%, 40대 28.6%, 50대 11.2%로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학력은 고졸이 23.0%, 대학교 졸업이 71.9%, 대학원 졸업이 5.1%로 대졸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미혼은 35.7%, 기혼은 63.3%으로 나타났다.

경찰 근무기간은 10년 미만이 57.1%,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8.6%, 20년 이상~30년 미만이 10.2%, 30대 이상이 4.1%를 차지했고, 여성청소년과와 같이 아동학대 관련부서 근무기간은 3년 미만이 2.0%, 3년 이상~5년 미만이 65.3%, 5년 이상~10년 미만이 16.8%, 10년 이상이 15.8%로 나타났다.

제 2 절 측정도구의 신뢰도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통상 Cronbach's α값이 .70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 연구에서 리커트 5점척도를 사용한 변수에 대해 신뢰도 측정 결과, 신체적 학대 인식도는 0.756, 정서적 학대 인식도는 0.795, 성학대 인식도는 0.829, 방임 인식도는 0.916, 정서적 공감능력은 0.767, 체벌에 대한 태도는 0.889로 나타났으며, 모두 0.70 이상의 값으로 나와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항 제외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세 내용은 <표8>과 같다.

<표8>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

※ Cronbach's α = 0.914

변 수	항목 수	Cronbach 알파
신체적 학대 인식	8	.756
정서적 학대 인식	5	.795
성 학대 인식	7	.829
방임 인식	9	.916

정서적 공감능력	10	.767
체벌에 대한 태도	9	.889

제 3 절 주요 변수의 특성 및 상관관계

1.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신체적 학대 인식, 정서적 학대 인식, 성 학대 인식, 방임 인식 4가지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학대유형에 관한 29가지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최소값은 1이며 최대값은 5이다.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을 위해 각 학대유형별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표9>와 같다.

<표9>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체적 학대 인식	4.5804	0.42072	3.00	5.00
정서적 학대 인식	4.5122	0.55104	2.60	5.00
성 학대 인식	4.8535	0.30842	3.00	5.00
방임 인식	4.2517	0.66582	2.44	5.00
아동학대 인식	4.5495	0.39430	3.22	5.00

각 유형별 학대인식은 모두 만점인 5점에 가까운 4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성학대 인식이 4.85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가 4.5804, 정서적 학대가 4.5122 순이었으며, 방임 인식은 4.2517로 가장 낮았다. 한편 아동학대 인식 전체 평균값은 4.5495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에서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가 4.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다수 응답자들이 '틀림없는 학대다'라고 응

답했으며,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측정값이 3.5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정서적 학대에서는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가 4.90로 가장 높은 반면, '심하게 야단쳐서 아동의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가 4.11로 가장 낮았다. 성학대의 경우, '어른이 자신의 성기를 아동에게 갖다 대거나 넣는 행위'가 4.9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억지로 아동의 입을 맞추는 행위'가 4.65로 가장 낮았으나, 모두 4.5 이상을 나타내 대다수 항목에서 학대 인식수준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방임의 경우,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가 4.74로 가장 높았으나, '아동이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가 3.87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2.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독립변수는 크게 개인적 요인과 직무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적 요인은 정서적 공감능력, 체벌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보았으며, 직무적 요인은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1) 개인적 요인

<표10> 독립변수 개인적요인의 기초통계량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서적 공감능력	3.5811	0.59044	1.80	5.00
체벌에 대한 태도	3.5104	0.87388	1.00	5.00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10>과 같다. 구체적으로 정서적 공감능력의 평균값은 3.5811였으며, 이 측정값은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다는 의미이다. 체벌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은 3.5104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체벌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두 요인 모두 리커트척도 중간값인 3점을 상

회했으며, 두 개의 측정값 모두 3점 중반대를 나타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 직무적 요인 (법지식 정도)

<표11> 독립변수 직무적 요인의 기초통계량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법지식 정도	6.5510	1.87081	1	10

직무적 요인 중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정도의 기초통계량은 <표11>과 같으며, 각 문항마다 정답을 기재할 경우 1점으로 환산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표본의 법지식 정도 평균값은 6.5510으로 나타났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1점부터 10점까지 나타나 최저점과 최고점이 모두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가 이뤄진 선행연구와 결과를 비교하면, 김현주(2020)의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2점 만점에 평균점수가 5.06점으로 나타났으며, 박미경 외(2015)의 창원지역 교원에 대한 연구에서는 12점 만점 기준 7.71점이 나타났고, 김진선·박경숙(2005)의 간호사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12점 만점 기준 평균 7.08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2011) 실태조사에서의 신고의무자를 상대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12점 만점에 7.39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정답률을 비교하면 <표12>와 같은데, 경찰관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아동학대관련 법지식 평균값 비교

구 분	연구 대상	평균값 (만점기준)	정답률 (%)
본 연구	서울지역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6.5510 (10점)	65.51
김현주 (2020)	초등학생 부모	5.06 (12점)	42.1

박미경 외 (2015)	창원지역 교원	7.71 (12점)	64.25
김진선·박경숙 (2005)	간호사	7.08 (12점)	59.0
보건복지부 (2011)	신고의무자	7.39 (12점)	61.58

한편, 본 연구에서의 각 문항별 정답률은 <표13>과 같다. 세부적으로 1번 문항인 '목둘레의 멍은 보통 사고에 의한 외상과 관련된다'는 질문의 정답률이 37.8%로 가장 낮았으며, 5번 문항인 '아동학대와 방임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층 또는 상류층 집단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질문의 정답률이 90.3%를 나타내 가장 높았다. 정답률이 50%를 하회하는 문항은 2개로 1번 문항과 6번 문항이었는데, 1번 문항은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문항이었으며, 6번 문항은 방임에 관한 문항이었다.

<표13> 독립변수 직무적 요인(법지식 정도) 문항별 정답빈도

연번	문 항	빈도 (명)	백분율 (%)
1	목둘레의 멍은 보통 사고에 의한 외상과 관련된다.(정답 X)	74	37.8
2	아동의 모든 성적학대는 신체적인 폭력이 동반된다.(정답 X)	130	66.3
3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보통 학대를 당한 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정답 X)	146	74.5
4	아동학대로 의심한 사례를 신고한 전문가는 만일 법정에서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정답 X)	136	69.4
5	아동학대와 방임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층 또는 상류층 집단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정답 X)	177	90.3
6	아동학대와 방임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아동은 부모와 격리되지 않는다.(정답 O)	84	42.9
7	성적학대를 당하는 대부분의 아동은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한다.(정답 X)	165	84.2
8	아동에 대한 대부분의 성적학대는 성교를 포함한다.	107	54.6

	(정답 X)		
9	가출을 한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가출 전에 학대를 당했다, (정답 O)	122	62.2
10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신체검진에서 정상일 수 있다. (정답 O)	143	73

문항별 정답률에 대해 보건복지부(2011) 실태조사에서 신고의무자의 응답 결과와 비교해 보았는데, '아동학대로 의심한 사례를 신고한 전문가는 만일 법정에서 아동학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고소를 당할수도 있다'는 문항에서 신고의무자의 정답률이 28.5%로 매운 낮은 수치를 나타냈난 반면, 의외로 '목둘레의 멍은 보통 사고에 의한 외상과 관련된다'는 질문과 '아동학대와 방임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아동은 부모와 격리되지 않는다'는 질문에서 신고의무자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별 정답률 차이는 <표14>와 같다.

<표14> 경찰관과 신고의무자의 법지식 문항별 정답률 비교

연번	문 항	경찰관 (%)	신고의무자 (%)
1	목둘레의 멍은 보통 사고에 의한 외상과 관련된다.(정답 X)	37.8	44.2
2	아동의 모든 성적학대는 신체적인 폭력이 동반된다.(정답 X)	66.3	48.4
3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보통 학대를 당한 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정답 X)	74.5	79.2
4	아동학대로 의심한 사례를 신고한 전문가는 만일 법정에서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정답 X)	69.4	28.5
5	아동학대와 방임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층 또는 상류층 집단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정답 X)	90.3	84.9
6	아동학대와 방임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아동은 부모와 격리되지 않는다.(정답 O)	42.9	53.3

7	성적학대를 당하는 대부분의 아동은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한다.(정답 X)	84.2	87.7
8	아동에 대한 대부분의 성적학대는 성교를 포함한다.(정답 X)	54.6	49.0
9	가출을 한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가출 전에 학대를 당했다, (정답 O)	62.2	47.3
10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신체검진에서 정상일수 있다. (정답 O)	73	70.8
평균 정답률		65.52	59.33

3.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성별, 학력, 연령, 혼인여부, 자녀수, 재직기간, 아동학대 관련부서 근무기간 등 7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들을 측정대상의 크기에 따라 순서적으로 배열한 등간척도로 변환하여 상대적 크기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세부적으로는 <표15>에 제시되어있다.

<표15>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 별	0.6837	0.46623	0	1
학 력	0.8214	0.50000	0	2
연 령	1.4031	0.82635	0	3
혼인여부	0.6327	0.48332	0	1
자녀수	0.84	0.945	0	3
재직 기간	0.6122	0.83060	0	3
아동학대 관련부서 근무경력	0.5459	0.83078	0	3

성별은 평균값인 0.5를 넘는 0.6837로 나와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학력은 0.8214로 평균값이 대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4031로 나와 30대와 40대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혼인여부는 평균인 0.5를 넘는 0.6327이 나와 기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직기간은 0.6122로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사이가, 학대관련 부서 근무경력은 3년에서 5년 사이가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4.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신체적 학대인식은 통제변수 중 학력과 자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와 모든 독립변인과 상관관계를 가졌다. 세부적으로 통제변수 중 성별($r=0.539$, $p<0.001$), 연령대($r=0.192$, $p<0.01$), 혼인여부($r=0.168$, $p<0.05$), 재직기간($r=0.200$, $p<0.01$), 관련부서 근무기간($r=0.193$, $r<0.01$)과 독립변수 중 정서적 공감능력($r=0.257$, $p<0.001$), 체벌에 대한 태도($r=0.494$, $p<0.01$), 법지식 수준($r=0.229$, $p<0.01$)과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서적 학대 인식은 통제변수 중 성별($r=-0.176$, $p<0.05$), 연령대($r=0.161$, $p<0.05$), 혼인여부($r=0.144$, $p<0.05$)와 독립변수 중 정서적 공감능력($r=0.245$, $p<0.001$), 체벌에 대한 태도($r=0.369$, $p<0.001$)과 상관관계를 가졌다.

성 학대 인식은 통제변수 중 자녀수($r=-0.150$, $p<0.05$)와 독립변수 중 체벌에 대한 태도($r=0.165$, $p<0.05$)과 상관관계를 가졌다.

방임 인식은 통제변수 중 혼인여부($r=0.158$, $p<0.05$), 자녀수($r=0.177$, $p<0.05$), 재직기간($r=0.190$, $p<0.01$)과 나타냈으며, 모든 독립변수, 즉 정서적 공감능력($r=0.283$, $p<0.001$), 체벌에 대한 태도($r=0.342$, $p<0.001$), 법지식 수준($r=0.148$, $p<0.05$)와 상관관계를 가졌다.

연령대는 혼인여부($r=0.527$, $p<0.001$), 자녀수($r=0.706$, $p<0.001$), 재직기간($r=0.804$, $p<0.001$), 관련부서 근무기간($r=0.380$, $p<0.001$), 정서적 공감능력($r=0.236$, $p<0.001$), 체벌에 대한 태도($r=0.285$, $p<0.001$)와 상관관계

를 가졌다.

혼인여부는 자녀수(r=0.658, p<0.001), 재직기간(r=0.804, p<0.001), 관련부서 근무기간(r=0.380, p<0.001), 정서적 공감능력(r=0.236, p<0.001), 체벌에 대한 태도(r=0.285, p<0.001)와 상관관계를 가졌다.

자녀수는 재직기간(r=0.673, p<0.001), 관련부서 근무기간(r=0.313, p<0.001), 체벌에 대한 태도(r=0.365, p<0.001)와 상관관계를 가졌다.

재직기간은 관련부서 근무기간(r=0.316, p<0.001), 정서적 공감능력(r=0.224, p<0.001), 체벌에 대한 태도(r=0.348, p<0.001)와 상관관계를 가졌다.

관련부서 근무기간은 체벌에 대한 태도(r=0.251, p<0.001)와 정서적 공감능력은 체벌에 대한 태도(r=0.149, p<0.05)와 체벌에대한 태도는 법지식 수준(r=0.223, p<0.01)과 상관관계를 난타냈다.

한편, 성별은 어떤 변수와도 상관계를 갖지 않았다.

회귀분석 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는 이유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건을 만족해기 위해서인데, <표16>에서 나타나듯, 모든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0.9 이하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 기준의 값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16>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신체적 학대 인식	1													
2 정서적 학대 인식	.650***	1												
3 성 학대 인식	.539***	.487***	1											
4 방임 인식	.489***	.607***	.345***	1										
5 성별	-.161*	-.176*	-.135	-.078	1									
6 학력	-.032	.073	.073	.034	.004	1								
7 연령대	.192**	.161*	-.009	-.140	.013	.163*	1							
8 혼인여부	.168*	.144*	-.117	.158*	.028	.173*	.527***	1						
9 자녀수	.095	.095	-.150*	.177*	.107	.168*	.706***	.658***	1					
10 재직기간	.200**	.129	-.023	.190**	.079	.030	.804***	.461***	.673***	1				
11 관련부서 근무기간	.193**	.128	-.009	.038	-.108	.100	.380***	.298***	.313***	.316***	1			
12 정서적공감능력	.257***	.245***	.113	.283***	.055	-.044	.236***	.085	.088	.224***	.072	1		
13 체벌에 대한 태도	.494**	.369***	.165*	.342***	.005	-.044	.285***	.351***	.365***	.348***	.251***	.149*	1	
14 법지식	.229**	.115	.072	.148*	-.070	.051	.108	.078	.110	.109	.043	.093	.223**	1

$^{*}p < .05$, $^{**}p < .01$, $^{***}p < .001$

제 4 절 가설 검증

1.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차이

1) 신체적 학대 인식의 평균 차이

<표17>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신체적 학대 인식 평균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여성	62	4.6794	.3354	2.517	.013*	
	남성	134	4.5345	.4485			
학력	고등학교 졸업	45	4.6111	.4207	0163	.725	
	대학교 졸업	141	4.5700	.4250			
	대학원 졸업	10	4.5875	.3910			
연령	20대[a]	21	4.5655	.3202	3.558	.015*	b<d
	30대[b]	97	4.5013	.4454			
	40대[c]	56	4.6384	.4112			
	50대[d]	22	4.7955	.3308			
혼인여부	미혼	72	4.4878	.3840	-2.450	.015*	
	기혼	124	4.6341	.4330			
자녀수	0명	94	4.5213	.3917	1.485	.220	
	1명	50	4.6700	.4147			
	2명	41	4.5884	.4314			
	3명 이상	11	4.6477	.5990			
재직기간	10년미만	112	4.5134	.4229	2.722	.046*	
	10년이상~20년미만	56	4.6384	.4308			
	20년이상~30년 미만	20	4.7000	.3703			
	30년이상	8	4.8125	.2500			
관련부서 근무기간	3년미만	4	4.5371	.3981	3.607	.014*	
	3년이상~5년 미만	128	4.5303	.5000			
	5년이상~10년미만	33	4.7984	.3486			
	10년이상	31	4.6875	.5448			

*p<.05, **p<.01, ***p<.001

<표17>과 같이 성별, 연령, 혼인여부, 재직기간, 관련부서 근무기간에 따라 신체적 학대인식 점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라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2.517, p=0.013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자는 평균 4.6794점, 남자는 4.5345점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2) 학력에 따른 차이

학력 간에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0.163, p=0.725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학력의 두 집단 간에는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 간에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3.558, p=0.015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연령의 두 집단 간에는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scheffe test 결과 30대와 50대 간의 신체적 학대 인식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30대의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가 평균 4.5013점, 50대는 평균 4.7955점으로 50대가 30대보다 신체적 학대인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4) 혼인여부에 따른 차이

혼인여부에 따라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2.450, p=0.015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혼인여부에 따라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혼은 평균 4.4878점, 기혼은 4.6341점으로 미혼보다 기혼이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5) 자녀 수에 따른 차이

자녀수 간에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1.485, p=0.220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자녀수의 두 집단 간에는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6)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

재직기간 간에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3.558, p=0.015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연령의 두 집단 간에는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관련부서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

관련부서 근무기간 간에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3.607, p=0.014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관련부서 근무기간의 두 집단 간에는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서적 학대 인식의 평균 차이

<표18>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정서적 학대 인식 평균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여성	62	4.6548	.3835	2.924	.004**	
	남성	134	4.4463	.6032			
학력	고등학교 졸업	45	4.4267	.6376	.708	.494	
	대학교 졸업	141	4.5390	.5215			
	대학원 졸업	10	4.5200	.5593			
연령	20대[a]	21	4.4952	.4842	2.639	.51	
	30대[b]	97	4.4351	.6144			
	40대[c]	56	4.5429	.5041			
	50대[d]	22	4.7909	.3053			
혼인여부	미혼	72	4.4083	.5750	-2.028	.044*	
	기혼	124	4.5726	.5296			
자녀수	0명	94	4.4723	.5422	0.635	.593	
	1명	50	4.4960	.6023			
	2명	41	4.5902	.4938			
	3명 이상	11	4.6364	.6120			
재직기간	10년미만	112	4.4500	.0534	1.223	.302	
	10년이상~20년미만	56	4.5821	.0714			
	20년이상~30년 미만	20	4.5900	.1218			
	30년이상	8	4.7000	.1511			
관련부서 근무기간	3년미만	4	4.4844	.5502	1.898	.131	
	3년이상~5년 미만	128	4.4182	.6292			
	5년이상~10년미만	33	4.6903	.4556			
	10년이상	31	4.8000	.2309			

*p<.05, **p<.01, ***p<.001

<표18>과 같이 성별, 혼인여부에 따라 정서적 학대인식 점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라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2.924, p=0.004로 유의수준 0.01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자는 평균 4.6548점, 남자는 4.4463점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2) 학력에 따른 차이

학력 간에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0.708, p=0.494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학력의 두 집단 간에는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 간에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2.639, p=0.51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연령의 두 집단 간에는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혼인여부에 따른 차이

혼인여부에 따라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2.450, p=0.015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혼인여부에 따라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혼은 평균 4.4878점, 기혼은 4.6341점으로 미혼보다 기혼이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5) 자녀 수에 따른 차이

자녀수 간에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0.6355, p=0.593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자녀수의 두 집단 간에는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6)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

재직기간 간에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1.223, p=0.302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재직기간의 두 집단 간에는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5) 관련부서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

관련부서 근무기간 간에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1.898, p=0.131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관련부서 근무기간의 두 집단 간에는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성 학대 인식의 평균 차이

<표19>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성 학대 인식 평균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여성	62	4.9147	.1763	2.380	.018*	
	남성	134	4.8252	.3502			
학력	고등학교 졸업	45	4.8381	.4024	0.115	.892	
	대학교 졸업	141	4.8561	.2797			
	대학원 졸업	10	4.8857	.2213			
연령	20대[a]	21	4.9116	.1833	0.371	.774	
	30대[b]	97	4.8380	.3484			
	40대[c]	56	4.8495	.3014			
	50대[d]	22	4.8766	.2303			
혼인여부	미혼	72	4.9008	.2231	1.835	0.068	
	기혼	124	4.8260	.3463			
자녀수	0명	94	4.9058	.2121	2.469	.063	
	1명	50	4.7943	.3477			
	2명	41	4.8467	.2917			
	3명 이상	11	4.7013	.6591			
재직기간	10년미만	112	4.8610	.3088	0.060	.981	
	10년이상~20년미만	56	4.8444	.3238			
	20년이상~30년 미만	20	4.8357	.3084			
	30년이상	8	4.8571	.2290			
관련부서근무기간	3년미만	4	4.8616	.3078	0.353	.787	
	3년이상~5년 미만	128	4.8182	.3015			
	5년이상~10년미만	33	4.8433	.3407			
	10년이상	31	4.8535	.0714			

*p<.05, **p<.01, ***p<.001

<표17>과 같이 성별에 따라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라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2.380, p=0.018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성 학대 인식 점수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자는 평균 4.9147점, 남자는 4.8252점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성 학대 인식 점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2) 학력에 따른 차이

학력 간에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0.115, p=0.892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학력의 두 집단 간에는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 간에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0.371, p=0.774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연령의 두 집단 간에는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혼인여부에 따른 차이

혼인여부에 따라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1.835, p=0.068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혼인여부에 따라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5) 자녀 수에 따른 차이

자녀수 간에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2.469, p=0.063으

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자녀수의 두 집단 간에는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6)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

재직기간 간에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0.060, p=0.981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재직기간의 두 집단 간에는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5) 관련부서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

관련부서 근무기간 간에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0.353, p=0.787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관련부서 근무기간의 두 집단 간에는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방임 인식의 평균 차이

<표20>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방임 인식 평균 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scheffe
성별	여성	62	4.3280	.5035	1.244	.215	
	남성	134	4.2164	.7278			
학력	고등학교 졸업	45	4.2173	.6461	.312	.733	
	대학교 졸업	141	4.2719	.6673			
	대학원 졸업	10	4.1222	.7776			
연령	20대	21	4.2593	.5658	2.482	.062	
	30대	97	4.1718	.6986			
	40대	56	4.2520	.6407			
	50대	22	4.5960	.5924			
혼인여부	미혼	72	4.1142	.6713	-2.225	0.027*	
	기혼	124	4.3315	.6520			
자녀수	0명	94	4.1336	.6673	2.228	.086	
	1명	50	4.2978	.6825			
	2명	41	4.4228	.6508			
	3명 이상	11	4.4140	.4845			
재직기간	10년미만[a]	112	4.1478	.6517	4.489	.005**	a<d
	10년이상~20년미만[b]	56	4.3929	.6513			
	20년이상~30년미만[c]	20	4.1833	.7310			
	30년이상[d]	8	4.8889	.1454			
관련부서 근무기간	3년미만	4	4.2543	.6471	1.150	.330	
	3년이상~5년미만	128	4.1010	.7593			
	5년이상~10년미만	33	4.4086	.5825			
	10년이상	31	4.1944	1.0158			

*p<.05, **p<.01, ***p<.001

<표20>과 같이 혼인여부, 재직기간에 따라 방임 인식 점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라 방임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1.244, p=0.215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방임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학력에 따른 차이

학력 간에 방임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0.312, p=0.733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학력의 두 집단 간에는 방임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연령에 따른 차이

연령 간에 방임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2.482, p=0.062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연령의 두 집단 간에는 방임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혼인여부에 따른 차이

혼인여부에 따라 방임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2.225, p=0.027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혼인여부에 따라 방임 인식 점수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혼은 평균 4.1142점, 기혼은 4.3315점으로 미혼보다 기혼이 방임 인식 점수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5) 자녀 수에 따른 차이

자녀수 간에 방임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2.228, p=0.086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자녀수의 두 집단 간에는 방임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6) 재직기간에 따른 차이

재직기간 간에 방임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4.489, p=0.005로 유의수준 0.01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재직기간의 두 집단 간에는 방임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scheffe test 결과 30년 이상과 10년 미만간의 간의 방임 인식 평균 차이가 나타났다. 30년 이상의 방임 학대 인식 점수가 평균 4.8889점, 10년 미만은 평균 4.1478점으로 30년 이상이 10년 미만보다 방임 인식에 대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5) 관련부서 근무기간에 따른 차이

관련부서 근무기간 간에 방임 인식 점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1.150, p=0.330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적어도 관련부서 근무기간의 두 집단 간에는 방임 인식 점수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개인적 요인과 직무적 요인이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구사회학적 특성 7개(성별, 학력, 연령대, 혼인여부, 자녀수, 재직기간, 관련분야 경력기간)을 통제한 후, 개인적요인(정서적 공감능력, 체벌에 대한 태도) 독립변수 2개와 직무적 요인(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독립변수 1개, 총 3개의 독립변수가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분석결과의 [모형1]은 성별, 학력, 연령대, 혼인여부, 자녀수, 재직기간, 관련분야 근무기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모형2]는 독립변수로 개인적요인(정서적 공감능력, 체벌에 대한 태도)와 직무적 요인(아동학대 관련 법지식)을 추가 투입하여 외생변수 통제 후에도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1) 신체적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21> 외생변수 통제 후 독립변수(개인적 요인과 직무적 요인)가 신체적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B	SE	t(p)	B	SE	t(p)
(상수)	4.561	0.091	50.370	3.274	0.201	16.288
성별	-0.134	0.064	-2.097*	-0.126	0.056	-2.277*
학력	-0.047	0.060	-0.774	-0.003	0.053	-0.050
연령대	0.034	0.066	0.512	0.048	0.059	0.816
혼인여부	0.130	0.081	1.607	0.050	0.071	0.706
자녀수	-0.079	0.051	-1.545*	-0.102	0.045	-2.257*
재직기간	0.088	0.062	1.421	0.020	0.055	0.359
관련부서 근무기간	0.057	0.038	1.492	0.027	0.034	0.811
정서적 공감능력				0.119	0.045	2.660**
체벌 태도				0.219	0.033	6.629***
학대관련 법지식				0.024	0.014	1.710
F(p)	3.096**			9.482***		
R^2	0.103			0.339		
adj.R^2	0.070			0.303		

*p<.05, **p<.01, ***p<.001

먼저,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모형1] F=3.096(p<.01), [모형2] F=9.482(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1]의 R^2=0.103, [모형2] R^2=0.339으로 R 제곱 변화량이 0.236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F=21.968)에 따른 유의확률 p=0.000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726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모형의 공차(TOL)와 VIF 값을 확인하여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계수 β값을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파악하였다.

첫째, 개인적 요인 중 정서적공감능력의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2)에서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2.660, p=0.008로 정서적 공감능력이 신체적 학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능력의 β=0.167로 부호가 정(+)적이므로 정서적 공감능력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학대 인식도는 증가하였다.

둘째, 개인적 요인 중 체벌에 대한 태도의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2)에서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6.629, p=0.000으로 체벌에 대한 태도는 신체적 학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에 대한 태도 β=0.456으로 부호가 정(+)적이므로 체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신체적 학대 인식도는 증가하였다.

셋째, 직무적 요인 중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의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2)에서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1.710, p=0.089로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은 신체적 학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서적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22> 외생변수 통제 후 독립변수(개인적 요인과 직무적 요인)가 정서적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B	SE	t(p)	B	SE	t(p)
(상수)	4.443	0.121	36.775	3.049	0.285	10.694
성별	-0.202	0.085	-2.380***	-0.208	0.079	-2.637***
학력	0.052	0.081	0.641	0.106	0.075	1.412
연령대	0.065	0.089	0.732	0.067	0.083	0.811
혼인여부	0.121	0.108	1.114	0.035	0.101	0.344
자녀수	-0.050	0.069	-0.724	-0.062	0.064	-0.970
재직기간	0.038	0.083	0.460	-0.035	0.077	-0.456
관련부서 근무기간	0.029	0.051	0.575	-0.003	0.048	-0.054
정서적 공감능력				0.186	0.064	2.922***
체벌 태도				0.229	0.047	4.878***
학대관련 법지식				0.001	0.020	0.037
F(p)	2.008			5.349***		
R^2	0.070			0.224		
adj.R^2	0.035			0.182		

*p<.05, **p<.01, ***p<.001

먼저,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모형1] F=2.008, [모형2] F=5.349(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1]의 R^2=0.070, [모형2] R^2=0.224으로 R 제곱 변화량이 0.155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F=12.297)에 따른 유의확률 p=0.000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421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모형의 공차(TOL)와 VIF 값을 확인하여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계수 β값을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파악하였다.

첫째, 개인적 요인 중 정서적공감능력의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2)에서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2.922, p=0.004로 정서적 공감능력이 정서적 학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능력의 β=0.199로 부호가 정(+)적이므로 정서적 공감능력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학대 인식도는 증가하였다.

둘째, 개인적 요인 중 체벌에 대한 태도의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2)에서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4.878, p=0.000으로 체벌에 대한 태도는 정서적 학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에 대한 태도 β=0.363으로 부호가 정(+)적이므로 체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정서적 학대 인식도는 증가하였다.

셋째, 직무적 요인 중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의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2)에서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0.037, p=0.970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은 정서적 학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23> 외생변수 통제 후 독립변수(개인적 요인과 직무적 요인)가 성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B	SE	t(p)	B	SE	t(p)
(상수)	4.882	0.068	71.827	4.408	0.169	26.034
성별	-0.076	0.048	-1.592	-0.075	0.047	-1.602
학력	0.039	0.045	0.861	0.058	0.044	1.306
연령대	0.050	0.050	1.001	0.057	0.049	1.157
혼인여부	-0.041	0.061	-0.670	-0.074	0.060	-1.240
자녀수	-0.082	0.039	-2.122***	-0.091	0.038	-2.396***
재직기간	0.029	0.047	0.614	0.001	0.046	0.031
관련부서 근무기간	-0.002	0.029	-0.073	-0.015	0.028	-0.529
정서적 공감능력				0.044	0.038	1.153
체벌 태도				0.092	0.028	3.307***
학대관련 법지식				0.003	0.012	0.255
F(p)	1.718			2.689***		
R^2	0.060			0.127		
adj.R^2	0.025			0.080		

*p<.05, **p<.01, ***p<.001

먼저,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모형1] F=1.718, [모형2] F=2.689(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1]의 R^2=0.060, [모형2] R^2=0.127으로 R 제곱 변화량이 0.067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F=4.719)에 따른 유의확률 p=0.003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70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모형의 공차(TOL)와 VIF 값을 확인하여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계수 β값을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파악하였다.

첫째, 개인적 요인 중 정서적 공감능력의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2)에서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1.153, p=0.251로 정서적 공감능력이 성 학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요인 중 체벌에 대한 태도의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2)에서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3.307, p=0.001로 체벌에 대한 태도는 성 학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에 대한 태도 β=0.261로 부호가 정(+)적이므로 체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성 학대 인식도는 증가하였다.

셋째, 직무적 요인 중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의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2)에서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0.255, p=0.799로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은 성 학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방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24> 외생변수 통제 후 독립변수(개인적 요인과 직무적 요인)가 방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B	SE	t(p)	B	SE	t(p)
(상수)	4.290	0.147	29.223***	2.525	0.350	7.214***
성별	-0.157	0.103	-1.523	-0.165	0.097	-1.711
학력	-0.012	0.098	-0.125	0.044	0.092	0.477
연령대	-0.089	0.108	-0.824	-0.108	0.102	-1.062
혼인여부	0.109	0.132	0.829	0.026	0.124	0.211
자녀수	0.067	0.083	0.801	0.067	0.079	0.847
재직기간	0.162	0.101	1.606	0.082	0.095	0.858
관련부서 근무기간	-0.039	0.062	-0.624	-0.068	0.059	-1.160
정서적 공감능력				0.282	0.078	3.614***
체벌 태도				0.213	0.058	3.691***
학대관련 법지식				0.017	0.024	0.699
F(p)	1.684			4.617***		
R^2	0.059			0.200		
adj.R^2	0.024			0.156		

*p<.05, **p<.01, ***p<.001

먼저,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모형1] F=1.684, [모형2] F=4.617(p<.001)으로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1]의 R^2=0.059, [모형2] R^2=0200으로 R 제곱 변화량이 0.141 증가하였다. R제곱 F변화량(F=10.844)에 따른 유의확률 p=0.001으로 통제변수 투입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44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회귀모형의 공차(TOL)와 VIF 값을 확인하여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모형1], [모형2] 모두 공차(TOL)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계수 β값을 통해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파악하였다.

첫째, 개인적 요인 중 정서적공감능력의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2)에서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3.614, p=0.000으로 정서적 공감능력이 방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공감능력 β=0.250로 부호가 정(+)적이므로 정서적 공감능력이 증가하면 방임 인식도는 증가하였다.

둘째, 개인적 요인 중 체벌에 대한 태도의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2)에서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3.691, p=0.000로 체벌에 대한 태도는 방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에 대한 태도 β=0.279로 부호가 정(+)적이므로 체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방임 인식도는 증가하였다.

셋째, 직무적 요인 중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의 영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2)에서 회귀 계수 검정 결과, t=0.699, p=0.485로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은 방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각 학대유형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표25>와 같다.

세부적으로 개인적 요인 중 정서적 공감능력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인식 3가지 종속변수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체벌에 대한 태도는 4가지 종속변수 모두에게 정(+)의 영향을 미쳤다.

직무적 요인 중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정도는 모든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인식 모두 체벌에 대한 태도의 β값이 정서적 공감능력의 β값보다 커서, 종속변수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5> 각 학대유형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종합

독립변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β	t(p)	β	t(p)	β	t(p)	β	t(p)
정서적 공감능력	2.660	0.167**	2.922	0.199***	1.153	0.083	0.250	3.614***
체벌 태도	6.629	0.456***	4.878	0.363***	3.307	0.261***	0.279	3.691***
학대관련 법지식	1.710	0.106	0.037	0.003	0.255	0.018	0.048	0.699

*p<.05, **p<.01, ***p<.001

5)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검증결과는 <표26>과 같다.

<표26> 가설 검증 결과

구 분	가설 내용	검증 결과
가설1	1-1. 정서적 공감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학대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1-2. 정서적 공감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학대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1-3. 정서적 공감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성 학대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기각
	1-4. 정서적 공감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방임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2	2-1. 체벌에 대한 부정적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학대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2-2. 체벌에 대한 부정적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학대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2-3. 체벌에 대한 부정적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성 학대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2-4. 체벌에 대한 부정적 태도 수준이 높을수록 방임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가설3	3-1. 아동학대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적 학대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기각
	2-2. 아동학대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학대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기각
	2-3. 아동학대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성 학대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기각
	2-4. 아동학대관련 법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방임 인식이 높아질 것이다.	기각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여성청소년업무 담당 경찰관들의 4가지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각 학대 유형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학대 인식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대응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시내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관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196명의 설문자료에 대해 SPSS for Windows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평균 아동학대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4.5495이었으며, 4가지 학대 유형 중 성 학대가 4.8535, 신체적 학대가 4.5804, 정서적 학대가 4.5122, 방임이 4.251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이혁, 박외병(2021)의 부산지역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의 측정치인 4.53과 비슷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CTS-PC척도를 기반으로 2011년 보건복지부의 전국단위 실태조사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가 이뤄졌기에 신고의무자와의 인식정도와의 비교한 바, 신고의무자의 학대인식은 전체평균이 4.5로 나타나, 경찰관 평균값 4.549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경우, 성학대 4.89, 신체적 학대 4.55, 정서적 학대는 4.34, 방임 4.24 순으로 학대 인식이 높았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 사회학적 특징에 따른 학대 인식 점수 평균값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혼인여부, 재직기간, 관련부서 근무기간은 신체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성별, 혼인여부는 정서적 학대 인식 점수 평균, 성별은 성 학대 인식 점수 평균에, 혼인여부, 재직기간은 방임인식 점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냈다.

셋째,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들의 개인적 특성 중 정서적 공감능력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덕희(2021)의 보육교사를 상대로 한 연구를 비롯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지되어 온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경찰관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심리나 감정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어,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상황을 보다 잘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마지순(2019)은 예비 유아교사에 관한 연구에서도 공감능력이 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학대신고는 학대 인식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공감능력이 높으면 학대인식이 높아져 학대신고로 이어진다는 맥락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감능력은 아동의 상황에 대한 민감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감수성의 수준이 유아를 적극 보호하고 유아의 필요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본 류미아, 윤혜주, 이병호(2019)의 연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개인적 특성 중 체벌에 대한 태도는 모든 종속변수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즉, 체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일수록 학대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체벌을 용인할 경우, 체벌과 학대를 사실상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벌에 대한 허용도가 낮을수록 학대로 인식하는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김혜영(2013), 김현주(2020)의 연구 등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체벌에 대한 용인도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체벌에 대한 태도는 평균값 3.5104을 나타냈는데, 선행연구 중 같은 설문문항으로 조사한 김정림・윤혜미(2002)와 김후자(2005)의 연구와 상대적 비교를 한 바, 김정림, 윤혜미(2002)의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4점 만점에 2.54를, 김후자(200

5)의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4점 만점에 2.7487을 나타냈고, 본 연구는 5점 만점의 평균값 3.5104를 나타내 4점 만점으로 환산시 2.8083으로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다만, 이는 연구대상의 차이, 선행연구가 지나치게 오래전에 실시된 점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직무적 요인 중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정도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인식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박미정·오두잠(2019)의 연구에서 모든 학대유형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김현주(2020)의 초등학생 부모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법지식이 정서적 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선행연구와의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의 경우 평상시 직무교육이나 근무과정에서 법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데다, 기본적 법지식 소양이 일반인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교원과 같은 신고의무자나 부모와 같이 학대주체와는 법지식 정도가 상이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박미정·오두남(2019)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은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법지식 수준에 따라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기에 조사방법에 의한 차이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196명의 설문응답 결과만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다소 적은 표본수로 인한 편의 발생가능성이 있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학대인식 및 개인적 요인의 측정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자기기입식 방법에 측정하였지만, 직무적 요인인 법지식 정도의 경우, 설문문항에 대한 정답 여부를 토대로 법지식 수준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개인적 요인의 영향력이 높게 나온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과 직무적 요인이 아동학대인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신체적, 정서적, 성 학대, 방임에 있어 체벌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경찰관의 아동학대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벌에 대한 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 절 정책적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 증진 방안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관 개개인의 정서적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온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 경우 모두 오랜동안 우리나라에 자리잡고 있는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아동학대 범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의 매'나 '훈육'을 미덕으로 여겨온 역사와 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간 경찰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대여성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해온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대 인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26조의2는 국가기관에게 연1회 아동학대 예방교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대부분 1회성 집체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체 교육보다는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해 여러차례에 걸쳐 소규모 단위의 밀도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여건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아동학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라도 교육횟수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중앙학교나 경찰교육원과 같은 예비경찰관 대상 교육기관 내 별도 교육과정을 개설해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체벌에 대한 잘못된 태도 개선을 위해 경찰 내부 조직원을 상대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되자,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해오고 있다. 다만, 일반 국민 대상 캠페인에 비해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은 매우 저

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청이 주도하여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자체 인식도 조사, 역할극, 홍보영상 경진대회 등을 통해 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부서 인재 선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학대인식 수준, 체벌에 대한 태도, 관련직무경험 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사제도의 경우 개인의 희망여부, 동료와의 관계, 적성,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에, 쉽사리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대업무의 중요도 및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부서 근무에 필요한 지식, 경험, 자격 등을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자격요건이나 선발기준을 최소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러한 자격과 기준을 바탕으로 학대업무 담당 인력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먼저, 이 연구는 그간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수준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많지 않았다는데 착안하여 학대 인식 정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신고의무자의 인식정도와 비교를 통해 경찰관의 인식 수준을 상대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연구결과 경찰관은 신고의무자와 유사한 수준의 아동학대 인식도를 나타냈고, 동일하게 성학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방임 순으로 학대인식 수준이 높았다.

두 번째로,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인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 연구 중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건에 불과한데, 인구사회학적 변인만을 독립변수로 삼거나, 학대인식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노충래·정익중·전종설·김정화, 2012; 이혁·박외병, 2021)

세 번째로 개인적 요인 중 정서적 공감능력과 체벌에 대한 태도가 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의 학대인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우선 서울지역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의 아동학대 인식에만 한정하여 분석하였기에, 표본의 특성상 전국의 모든 아동학대 담당부서 경찰관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표본은 196개에 불과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현재 서울지역 여성청소년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은 총 1,262명인데, 표본수가 15.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표본수를 확보하여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아동학대의 중요성을 고려해 경찰청 차원에서 전국의 여성청소년과 경찰관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정서적 공감능력과 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학대 관련 법지식 정도에만 한정하여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미 부모나 신고의무자를 상대로 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뤄진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업무환경와 같은 원인변수의 영향력을 연구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직무적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길 바란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인식조사라는 방법상의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종속변수인 아동학대 인식 정도의 경우,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자기기입식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응하는 당시의 기분상태나, 설문문항의 반복 정도, 설문 문항의 연상 효과 등의 영향으로 실제와는 다른 응답을 할 수 있다.(백상용, 2012) 특히, 인식조사의 경우 조사 직전에 응답자가 직면한 특정 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인식 수준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기에 조사결과의 일반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 중 개인적 요인인 체벌에 대한 태도와 정서적 공감 능력의 경우, 사실상 종속변

수와 같이 주관적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볼 수 있으며,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자기기입식 방법에 따라 측정되었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인 개인적 요인의 경우, 변수가 갖고 있는 특성이 유사하고, 조사 방법도 주관적 판단에 다른 자기기입식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다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네 번째로, 본 연구는 설문방식으로 설문지를 구성,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심층적인 연구결과 도출에는 제약이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관찰, 면담,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동시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한꺼번에 분석한 횡단면적 연구방법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경찰관의 인식은 범죄에 대한 대응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도 이제껏 아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해온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 경찰관은 배제되어 왔다. 이 연구를 계기로 주기적으로 경찰관들의 아동학대 인식도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며, 경찰관의 학대 인식수준이 한층 향상되어, 학대 예방 및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근절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참 고 문 헌

국가인권위, (2021),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경찰청. (2019), 아동학대 수사 업무매뉴얼

경찰청. (2021). 범죄통계(www.police.go.kr)

경찰청. (2019). 아동학대 수사 업무매뉴얼

경찰청. (20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경찰청 등 아동학대 관계부처 합동. (202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두산대백과사전

보건복지부.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표준국어대사전

강남수, 이상열. (2021). 아동학대에 관한 신임 경찰교육생의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13, 105-134.

강지영. (2002). 인권에 대한 인지 능력과 정서적 공감이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영향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 Studies on Defining Child Abuse in Korea and the Perceptual Differences between Mother and Child toward the Child Abuse / 고성혜.

공유경, 이영화. (2019). 예비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0(2), 237-247.

김경옥. (2006). “어린이집 학부모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화. (2017).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간호연구학회지, 1(2), 21-30.

김명신 (2017). 어린이집 교사의 공감능력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연, & 윤혜미. (2003).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무에 대한 태도. 생활과학연구논총, 7, 121-140.

김수진. (2017).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김성섭. (2019). "경찰관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김숙연(2009),「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예방교육 인식조사」,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영주, & 박혜원. (2001). 울산광역시 초・중등 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김요섭. (2011). 아동학대에 대한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인식 비교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3(4), 63-82.

김정림, & 윤혜미. (2002). 어머니의 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학대 인식. 생활과학연구논총, 6(2), 77-93.

김진선·박경숙(2005).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1, 211-220.

김현주. (2020). 초등학생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35(1), 103-124.

김현주, & 박미경. (2018).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영향 요인. 아동과 권리, 22(2), 127-144.

김혜영. (2013). 아동학대 및 신고에 관한 인식 연구-오산시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7(1), 29-53.

김혜정, & 김세곤. (2020).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아동학대 인식 및 방지노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4(2), 1-23.

김후자. (2005). 아버지의 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 상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남재성. (2014). 경찰공무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경찰 인권교육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13(2), 55-78.

노성훈, 안재경. (2020).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관의 인식: 근거이론적 방법 적용. 형사정책연구, 31(4), 129-162.

노충래. (2002).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3), 123-154.

노충래, 정익중, 전종설, 김정화. (2012). 법집행담당자의 아동학대 인식. 사회과학연구논총, 27, 77-106.

류기환. (2021). 아동학대 현황과 그 대응방안-행정조사와 경찰수사를 중심으로. 법이론실무연구, 9(1), 9-33.

류미아, 윤혜주, & 이병호. (2019). 유아교사의 아동학대인식과 인권감수성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4(2), 35-53.

마지순. (2019).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교직윤리,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7), 325-331.

민혜영, 김신정, 이정민, 강소라, & 이지은. (2017). 아동학대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조사.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2), 229-237.

박미정, 오두남. (2019).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0), 452-462.

박미경·김현주·강명진(2015).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학, 32, 115-135

박순기, 박정선. (2020). 경찰관의 인식이 가정폭력 사건 대응방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위험성 평가도구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치안정책연구, 34(2), 231-267.

박옥주. (2005).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직원들의 인식 연구 : 경상북도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박용운, 유태완, 김경미. (201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식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45, 73-98.

방희명. (2009).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211-234.

백상용. (2012). 한국 TAM 실증연구의 동일방법편의 분석. 정보시스템연구, 21(1), 1-17.

백영숙; 강병재 (2018).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 문제행동지도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수창의성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3(6), 213-235.

안재진. (2002). 아동학대 신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시 학부모를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양명자. (2016).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인식이 신고의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호연구, 1(1), 21-49.

오은영. (2013).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에 대한 부모의 인식.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선오, & 박복숙. (20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제에 대

한 인식 연구. 복지행정논총, 21, 25-59.
윤소연. (2004).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윤영배, 유준호, (201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학대인식, 인성,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6(4), 277-303.
윤혜미. (1997).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 및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 인식조사.” 한국사회복지학 31: 393～422.
이명신, 양난미. (2011). 남성경찰관의 성폭력 수사행동 (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1), 159-185.
이명신, 양난미, 김정희, 문유정. (2015).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실천, 다전문직간 관계가 연계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관련 경찰과 상담사를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1). 43-85
이병록, 정선희. (2019). 사회적 지지와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 사이의 관계에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조절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7(6), 447-455.
이병록, 황환. (2018). 학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인식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디지털융복합연구,16(11),535-542.
이배근. (2004).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 Theory and Pract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
이세원. (2017).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지향에 대한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영돈. (2016).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 강원법학, 48, 423-450.
이옥경 외. (2009).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조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보고서.
이지수, & 한지수. (2020). 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4(6), 175-194.
이현순. (2014).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혁, 박외병. (2021). 여성청소년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고충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학대인식의 조절효과. 한국경찰연구, 20(4), 285-310.

장응혁. (2017).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 개선방안 - 경찰의 초기 대응과 법적 권한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7(1), 89-111.

전진욱. (2006).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태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덕희, & Chung, Dukhee. (2021). 보육교사의 공감능력과 아동학대인식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8(4), 77-98.

정소영. (2003).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인식.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종오. (2008).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정채옥. (2002). "유아 교육 기관장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연구." 유아교육연구 22(1): 185~209

조명자, & 이서영. (2016).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영유아 권리 및 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일반가정과 취약가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20(2), 277-295.

조현주. (2018).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보직이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소진의 매개역할 및 인센티브,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채윤경. (2017). 취약계층대상 아동복지종사자의 아동권리인식이 아동학대 신고태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하영옥, (2018).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와 영향요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4(2), 178-185.

한소영, (2022). 보육교사의 아동권리 인식 수준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 발생원인, 개선방안 인식 차이.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

한유미, & 조명자. (2018).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인식과 아동학대 방지노력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22(2), 145-162.

허남순. (200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3, 209-23

홍순옥, 이옥경. (2010). "초등학생 학부모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9(3): 75~90.

홍인실, 전정민. (2020).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한국자치행정학보, 34(2), 189-205.

Belsky, J. (1993).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developmental€ cologic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3), 413.

Fontana, V. J., & Besharov, D. J. (1979). The maltreated child: The maltreatment syndrome in children: A medical, legal, and social guide. Thomas.

Gil, D. G. (1975). Unraveling child abu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5(3), 346.

Hoffman, M. L. (1975),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5):

Jasmine S. Chan, Yvonne Chow, John M. Elliott. (2000). Professional and Public Perceptions of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in Singapore. Singapore Children's Society

Kempe, C. H., Silverman, F. N., Steele, B. F., Droegemueller, W., & Silver, H. K. (1962). The battered-child syndrome. Jama, 181(1), 17-24.

Lau EE, Kosberg JI: Abuse of the elderly by informal care providers. Aging 12: 299 - 300, 1979.

Lui, Zhi Jing, Tan, Jacky Chin Gee, Koh, Chee Wan, Liu, Denise, Elliott, John M, Fu, Charlene S. L, & Teo, Cuthbert Eng Swee. (2020). Perceptions of Child Maltreatment Among Professionals and the Public in Singapo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8626052092187-886260520921872.

Saunders, E. J. (1988). "A comparative study of attitudes toward child sexual abuse among social work and judicial system professionals." Child Abuse & Neglect 12(1): 83～90

Straus, M., Hamby, S., Finkelhor, D., Moore, D., & Run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Trute, B., E. Adkins, and G. MacDonald. (1992). "Professional attitudes regarding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Comparing police, child welfare and community mental health." Child Abuse & Neglect 16(3):

359～368

Zaphiris, A. G. (1982). Child Abuse: An Interactional Event, by Alfred Kadushin and Judith A. Martin with the Assistance of James McGloin.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1. $25.00 Cloth. 304 Pp.

설 문 지

※ 다음은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행동이 어느정도 심각한 아동학대인지 '전혀 학대가 아니다', '학대가 아닌 것 같다', '모르겠다,' '학대인 것 같다', '틀림없는 학대다' 중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연번	구 분	설문 항목
1	신체적 학대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2	신체적 학대	세게 밀치는 행위
3	신체적 학대	회초리 이외의 물건(벨트, 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
4	신체적 학대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때리는 행위
5	신체적 학대	물건(재떨이, 책, 그릇, 의자 등)을 던지는 행위
6	신체적 학대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7	신체적 학대	칼이나 흉기로 위협을 하는 행위
8	신체적 학대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9	정서적 학대	심하게 야단쳐서 아동의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10	정서적 학대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오라!"고말하는 행위
11	정서적 학대	욕(멍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등)을 하는 행위
12	정서적 학대	아동에게 "나가 죽어라"고 말하는 행위
13	정서적 학대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
14	성 학대	억지로 아동의 입을 맞추는 행위
15	성 학대	아동이 싫다고 해도 아동의 몸을 만지는 행위
16	성 학대	억지로 아동의 옷을 벗겨 아동의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17	성 학대	성인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18	성 학대	어른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19	성 학대	아동이 싫어하는데도 어른이 자기 몸을 만져달고 하는 행위
20	성 학대	어른이 자신의 성기를 아동에게 갖다 대거나 넣는 행위
21	방임	어두워질 때까지 아동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
22	방임	아동의 옷이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지 않는 행위
23	방임	아동이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24	방임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 두는 행위
25	방임	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
26	방임	아동에게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27	방임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28	방임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29	방임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해도 아동에게 아무 말도 안하는 행위

※ 다음은 정서적 공감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로 답하시오.

연번	설문 항목
1	실직을 당해서 자식의 분유 값도 대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가장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2	가난한 무의탁 노인을 보면 기분이 상한다.
3	경기불황으로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노숙자들을 보면 기분이 우울해진다
4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같이 전쟁으로 고통 받는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
5	내가 평소 싫어하는 친구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전혀 동정이 가지 않는다.(역채점)
6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참 안쓰럽다
7	학살이나 구금, 고문 등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의 영화(또는 tv)에 깊이 빠져드는 편이다
8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
9	주변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나도 감정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10	개인의 사생활을 염탐하는 TV오락프로그램을 보면 즐겁기보다는 짜증이 난다.

※ 다음은 체벌에 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 ,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로 답하시오.

연번	설문 항목
1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격언은 옳다
2	사랑의 매는 아이에게 좋다고 생각한다.
3	나쁜 버릇을 고치는 데는 그래도 매가 효과적이다
4	이유를 막론하고 아이에게 매를 들면 안된다.(역)
5	모든 부모는 말을 듣지 않거나 말썽을 피우는 자기 자녀에게 매를 들 권리가 있다.
6	아이들은 때리지 않고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역)
7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매를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8	자기 아이가 미워서 때리는 부모는 없다.
9	아이를 때려 키우면 때리는 것이 습관이 된다.(역)

※ 다음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수강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번	설문 항목	선택지
1	아동 학대 관련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2	아동복지학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3	혼자서 아동 학대 관련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 다음은 학대관련 지식에 대한 질문으로 옳으면 O, 틀리면 X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설문 항목
1	목둘레의 멍은 보통 사고에 의한 외상과 관련된다.
2	아동의 모든 성적학대는 신체적인 폭력이 동반된다.
3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보통 학대를 당한 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x)
4	아동학대로 의심한 사례를 신고한 전문가는 만일 법정에서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x)
5	아동학대와 방임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류층 또는 상류층 집단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x)
6	아동학대와 방임의 대부분의 사례에서 아동은 부모와 격리되지 않는다.(0)

7	성적학대를 당하는 대부분의 아동은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한다.(x)
8	아동에 대한 대부분의 성적학대는 성교를 포함한다.(x)
9	가출을 한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가출 전에 학대를 당했다(0)
10	성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신체검진에서 정상일수 있다(o)

※ 다음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번	설문 항목	선택지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여성 ②남성
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대학원 졸업 ②대학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50대 ②40대 ③30대 ④20대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미혼 ②기혼
5	귀하의 자녀의 수는 몇 명인가요?	①0명 ②1명 ③2명 ④3명 ⑤4명 이상
6	귀하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연수는 대략 얼마입니까?	①10년 미만 ②10년 이상~20년 미만 ③20년 이상~30년 미만 ④30년 이상
7	귀하가 아동학대 관련부서(여성청소년과 등)에서 근무한 재직연수는 대략 얼마입니까? *2013년 이후 여성청소년과 신설, 이전에는 여성청소년계와 형사과에서 학대업무 담당	①3년 미만 ②3년 이상~5년 미만 ③5년 이상~10년 미만 ④10년 이상~20년 미만 ⑤20년 이상~30년 미만 ⑥30년 이상

Abstract

Studies on Factors Affecting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 Focusing on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woman and juvenile affairs in Seoul -

Cho Yong Hwa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with women and juvenile departments of police stations in Seoul and to seek ways to improve their level of awareness towards child abuse as a serious crime, and eventually to eradicate child abuse.

The police take significant role in child abuse cases from preventing the crime to conducting follow up measures. The death of Jeong-in, a 16-month-old toddler who died from months of child abuse in Oct. 2020, however, revealed that passive reactions and attitude by police officers toward child abuse cases, could bring a tragic ending, which could have been prevented otherwise.

Nonetheless, there are only two studies on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child abuse and maltreatment within the country. This study, therefore, was devised to examine how much police officers

take child abuses seriously and explore causal variables affecting their perceptions towards child maltreatment.

A total of 196 police officers currently working at women and juvenile departments at 31 police stations under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or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participated in a survey conducted for this study.

The survey had four dependent variables that gauge the level of their awareness on physical, emotional, sexual abuses and child neglect. As for independent variables, the study included instruments examining personal factors such as empathic ability and attitude towards punishment and the level of legal knowledge as an occupational factor. The study also set demographic peculiarity as a control variable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police officer's level of awareness towards child abuse was 4.5495 out of five points on average, and by abuse cases,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s sexual abuse was 4.8535, physical abuse 4.5804, emotional abuse 4.5122 and child neglect 4.2515.

Also, the study found that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 physical abuses showed differences from variables such as the gender of officers, the age, their marital status, the period of time they worked with the police, particularly the length of their engagement in juvenile departments, while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s emotional abuse appeared to be affected by the gender of officers and marital status.

The level of perception towards sexual abuse also appeared to have been affected by the gender of the officer while the level of awareness on child neglect appeared to have been affected by the marital status and the period of the officers' service, each exhibiting significant differences statistically.

Also, personal ability to recognize emotions and share their feelings

had positive impact on officers' perception in physical, emotional abuse and child neglect while attitude towards punishment had positive impact on all four dependent variables.

The level of officers' legal knowledge on child abuse appeared to hav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four types of abuses.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followings are policy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police officers' perceptions towards child abuse.

First, the police should develop education designed to improve officers' personal ability to understand others' emotions. Under the child welfare law in Korea, state agencies are obliged to carry out education session on child abuse prevention. Such sessions, however, have low educational effect as they have been replaced with either online or group courses and are held for only once a year. Therefore, there's a need to design professional curriculums and hold sessions for small number of people to maximize the effect of education on child abuse prevention.

Second, an in-house campaign is needed to promote officers' awareness on punishment. Such campaigns carried out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or the Ministry of Welfare and Health seem to have focused on changing the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Thus, the police need to hold workshop sessions exclusively designed to improve officers' awareness in collaboration with professional institutions, self investigation into the degree of recognition, stage role plays and launch a video contest.

Third, the police should set some new criteria that assess qualified police officers to handle abuse cases when hiring new ones to juvenile departments.

Finally, the study found that the police have been excluded from the welfare ministry-led research on child abuse cases. A study should

be carried out on officers' perception toward child abuse on a regular basis to improve the level of their awareness which could greatly contribute in eradicating child abuses in Korea.